



눈 쌓인 어승생악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7일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악에 눈이 쌓여 있다. 어승생악 뒤로 제주시 도심이 보인다. 연합뉴스

생태법인 지정 제주특별법 개정 '시동'

위성곤 국회의원 발의
“도시사가 제주 특정 생태계
생물종 ‘생태법인’ 지정 근거”

꽃자왈이나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제주 자연환경과 생물종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일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을 보호·보존·복원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의사결정과 후견제에서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 소송 당사자 지위

인정을 통해 자연을 대변, 대표할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국서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시 1호 생태법인 지정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위 의원은 또한 생태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국회·부미한기자

제주 첫 ‘주민자치회’ 8개 읍면동 출범

서귀포 4곳 어제 발대식... 제주시 4곳은 내일 예정
마을 의제 발굴해 자치계획 수립·추진 역할 수행
도 “주민 스스로 결정... 2026년 말까지 시범 실시”

제주지역 첫 ‘주민자치회’가 도내 8개 지역에서 출범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실시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취지에 맞게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새해를 기점으로 도내 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흥동 등 모두 8곳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6월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이어 왔다.

서귀포시는 주민자치회 출범을 기념해 7일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공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귀포 지역 4개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역시 9일 시청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별 위원 구성은 마무리됐지

만,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자치회장’ 선출 등은 1월 중 정기회의의 결을 통해 확정되면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자치회마다 행정 사무요원 채용을 위한 공모 등에 돌입한다.

주민자치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자치계획’은 오는 4-5월쯤 수립될 전망이다. 도내 나머지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자문 기구’에 머문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쉽게 말해 주민자치회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그 전에는 공무원이 개입해 지역 의제를 발굴·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업무 중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며 “읍면동이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주민자치회가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 출범한 도내 8개 주민자치회는 이달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민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보장 등이 중요 과제로 거론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다자녀가구 ‘K-패스’ 환급 혜택 확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올해부터 기존 환급 적용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케이(K)-패스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케이-패스’ 환급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

대 2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일반인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의 환급률을 적용 중이다.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유형이 신설, 시행된다. 월평균 대중교통비 10만원을 지출하는 3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20%에 해당하는 2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내 케이-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788명이다. 백금탁기자

제주, 최근 1년 자연재해 피해 100억원 육박... 3면 / 제주경찰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4면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농협중앙회 상무보



윤재춘

제34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고우일

제1대 농협은행 제주본부장



고은정

승진 및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조합장 일동

제주시농협
애월농협
제주남원농협

조천농협
하귀농협
표선농협

함덕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한림농협
제주안덕농협
제주감골농협

한경농협
중문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고산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산농협

김녕농협
효돈농협
제주양돈농협

구좌농협
제주위미농협